

제 373 호

1978.5.29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양택석

편집장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444 · 6090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1304 호 : 서울시립근로자회관설치조례시행규칙 3

◎ 훈 령

제 367 호 : 서울특별시 시세과장기관과 공무원의 실적
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 12

◎ 고 시

제 79 호 : 제 1 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14

◎ 사 명 15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666

규 칙

서울특별시립 근로자퇴직설치조례 시행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3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규칙 제 1304 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퇴직
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
근로자퇴직설치조례 (이하 "조례"라 함
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용인원) ①서울특별시립근로자
퇴직 (이하 "퇴직"이라 한다)의 수용
정원은 다음과 같다.

- 1. 서울특별시립동대문근로자퇴직 360 명
- 2. 서울특별시립남대문근로자퇴직 192 명
- 3. 서울특별시립영등포근로자퇴직 192 명

②전항의 정원을 초과한 인원은 이

를 수용할수 없다. 다만 시장의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용자의자격) 퇴직을 이용할수
있는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 1. 시내에서 자유업에 종사하는 무
의무탁한 영세근로자
- 2. 만 18세이상 65세까지의 대한민국
의 국민으로서 신원이 확실하
고 사상이 건전한자
- 3. 주민등록등본 소지하고 별역외무
를 기피하 사실이 없는자

제4조 (이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자는 퇴직을 이용할 수 없다.

- 1. 근로능력이 없는 퇴직자, 퇴직자
및 가족을 동반한자
- 2.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조
치불 받은 사실이 있는자
- 3. 퇴직후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제5조 (퇴직의이용신청등) ①퇴직의 이
용을 원하는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판장은 권장의 숙박권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이용 승인 여부를 심사결정 하여야 한다.

③권장의 회피하여 회관의 이용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한 숙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회관 이용자가 퇴관할 때에는 반드시 숙박증을 관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6 조 (퇴관조치) 관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하여야 한다.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변질한 자
2. 숙박증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관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를 동승시킨 자
3. 회관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자
4. 회관내에서 타인의 불건을 견제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는 자

5. 기타관장의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제 7 조 (숙박자카드등비치) ①회관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 4 호 서식에 의한 숙박자 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권장의 숙박자카드를 숙박중인 자와 퇴관자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퇴관날로부터 5 년간 이물 보관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제 5 조 및 제 7 조에 계기한 서류외에도 별지 제 5 호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8 조 (사용료 및 수수료수납) ①판장은 소관 시수입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조정결의를 월간후 수입금은 익일까지 시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판장은 매월 5 일까지 전월분의 수입징수보고서에 시금고가 발행하는

| | |
|---|---|
| <p>수입금 월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 <p>매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
| <p>제9조 (사용료의 감면) ①조치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편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전항의 감면액이 1,000원 이상인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 <p>제13조 (소지불의제한) ①회관을 이용하는 자는 그 이용기간중 개인 소유의 침구, 인화필통 및 목걸이 기타 관장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한도내에서 이용자의 물품을 수탁 보관할 수 있다.</p> |
| <p>제10조 (사용료의 환부) 이니 남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p>부 시</p> |
| <p>제11조 (사용료의 추정) 시장은 부정관 방법으로 사용료의 감면은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감면을 받은 사용료를 추정하여야 한다.</p> | <p>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 970</p> |
| <p>제12조 (손해배상) ①관장은 제5조제1호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p> | <p>호 (70.5.20) 서울특별시인근로자합숙소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p> |

민지제1호서적

숙박원

본 적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학 력:

직 업 : 협 수 입 액:

의 본원은 귀회관에 기숙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할 때에는 귀하의 어떠한 처분도 하등의 이의없이 감수할것을 서약하고 이에숙박원을 제출하오니 힘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시설 및 구조의 무단변경 손상 및 면실행위를 하지 아니함.
2. 숙박증의 전 매 또는 양도행위를 하지 아니함.
3. 회관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행위를 하지 아니함.
4. 회관내에서 일체의 도박 등 나쁜행위를 하지 아니함
5. 기숙중 정부 및 행정기관에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행위를하지 아니함
6. 기숙중 정부 및 행정기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함
7. 기숙중 퇴관주이나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함
8. 기숙중 관장의 지시명령에 불대복종 하겠음
9. 고의나과실을 불문하고 기숙중 퇴관주이나 또는 동숙자에게 손해를 끼쳤을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하겠음.

197 년 월 일

위 원 인

(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장 귀하

| 별지 제 2 호 서식 | | | | | | | | | | | | |
|-------------|-----|-----|-----|-----|-----|---------|---|-----|----------|------------|------------|-----|
| 접 수 대 강 | | | | | | | | | | | | |
| 인 적 사 항 | | | | | | 조 치 사 항 | | | | | | |
| 접 수 순위 | 성 명 | 인 령 | 학 령 | 직 업 | 원 수 | 연 락 처 | | | 입 소 일 | 조 치 사 항 | 입 소 원 일 | 비 고 |
| | | | | | | 본 이 | 계 | 3 자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2 | | | |

27 cm x 19.3 cm

| | | | | | | | | | |
|------------------------------|-------------|--|------|--|----------------|--|----------------|--|----|
| 별지 제 4 호서식 No. _____ (전면) | | | | | | | | | |
| 사 친 | 수박자카드 | | | | 입소일자 | | 년 월 일 | | |
| | 성명 | | 생년월일 | | 년 월 일 | | 입생학력 | | |
| 본적 | | | | | 주소 | | | | |
| 직업 | 취역장소: (공장명) | | | | 전화 | | 주소 | | |
| | 대표자성명 | | | | 실업이대 | | 취미 | | |
| 가족관계 | 보급등위 | | | | 자격면허 | | 특기 | | |
| | 부양가족수 | | | | 결혼여부 | | 기혼, 이혼, 미혼, 사별 | | |
| 병역관계 | 자취(비용) | | | | 원 (숙(비용)) | | 원 기타(비용) | | |
| | 역상 | | | | 지급 | | 군번 | | 병과 |
| 정당관계 | 예비군종대명 | | | | 예비군교육상항 | | 군번 | | |
| | 가입결남명 | | | | 가입년월일 | | 직위 | | |
| 형벌관계 | 리 | | | | 구역기간 | | 비고 | | |
| 자활계획 | 상견년월일 | | | | 상견동기 | | 합숙기간 | | |
| 신원조회 및 진강진단 | 신원조회 결과 | | | | 8. 15당시 기주지 | | 진강진단 결과 | | |
| 서울특별시립 근로자회관 17cm X 13cm | | | | | | | | | |

제 373 호

가

보

1973.5.29

17-9

| 별지 제 4 호서식 | | (후면) | | | | | | |
|---------------|-------------|------|-----|-----|---------|----|------|------|
| 클아하는 부식순위 | | 계 | | | 생 활 기 록 | | | |
| 국 | 부 식 | 월일 | 예금액 | 지금액 | 차감잔액 | 월일 | 합숙기간 | 기타사항 |
| 1.광나물() | 1. 김 치() | | | | | | | |
| | 2. 채 나 물() | | | | | | | |
| 2.서금치() | 3. 마 늘() | | | | | | | |
| | 4. 상 파() | | | | | | | |
| 3.배 추() | 5. 마늘쫑() | | | | | | | |
| | 6. 서 금치() | | | | | | | |
| 4. 무 () | 7. 부 추() | | | | | | | |
| | 8. 미 나 리() | | | | | | | |
| 5.깎 자 () | 9. 산 나 물() | | | | | | | |
| | 10.공 장() | | | | | | | |
| 6.홍 치() | 11.뎡 치() | | | | | | | |
| | 12.고 추장() | | | | | | | |
| 7.오징어() | 13.상 추() | | | | | | | |
| | 14.호 박() | | | | | | | |
| 8.농 대() | 15.오 이() | | | | | | | |
| | 16.고 추() | | | | | | | |
| 9.생 국 (미립)() | 17.외지무침() | | | | | | | |
| | 18.뎡 부지() | | | | | | | |
| 10.내장국() | 19.깎 아지() | | | | | | | |
| | 20.고추저님() | | | | | | | |
| 11.김치국() | 21.깎 두기() | | | | | | | |
| | 22.갓김치() | | | | | | | |
| | 23.아 지() | | | | | | | |
| | 24.도 라지() | | | | | | | |
| | 25.두 부() | | | | | | | |
| | 26.도 로묵() | | | | | | | |
| | 27.부랴랭이() | | | | | | | |

| | | | | | |
|-----------------------|------------|-----|---------|----|---|
| 별지 제 5 호 서식 | | 취급과 | 지방행정보 | 관장 | 결 |
| 업 무 일 지 | | | | | 제 |
| 일 자 요 일 일 기 | | | | | |
| 시 구분 선 별 | 현 | 화 | 업 무 내 용 | | |
| 합 속 실 | 1. 총 수 | 명 | | | |
| | 2. 퇴소자 | 명 | | | |
| | 3. 신입소자 | 명 | | | |
| | 4. 재속자 | 명 | | | |
| | 사용료징수 | 원 | | | |
| 식 당 | 1. 총 수 | 기 | | | |
| | 2. 조 식 | 기 | | | |
| | 3. 석 식 | 기 | | | |
| | 사용료징수 | 원 | | | |
| 이 발 소 | 1. 총 수 | 명 | | | |
| | 2. 대 인 | 명 | | | |
| | 3. 소 인 | 명 | | | |
| | 사용료징수 | 원 | | | |
| 목 유 탕 | 총 수 | 명 | | | |
| | 사용료징수 | 원 | | | |
| 비 고 | 1. 이용자총수 | 명 | | | |
| | 2. 사용료징수총액 | 원 | | | |
| | 기 타 | | | | |

훈 명

◎ 서울특별시 훈령 제 367 호

서울특별시 시세과장기관과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같이 제정한다.

1973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양 대 식

서울특별시시세과장기관과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속 시세과장기관과 과장담당공무원 (이하 「과장직」 이라한다) 의 실적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이에 상응한 신상편입을 행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세수증대불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평가사항) (1) 이 규정에 의한 평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입목표액 대 정수실적
2. 부과액 대 정수실적
3. 라년도 채납정리실적
4. 채납액중 채납차분(재원확보)실적

② 전항 각호의 채납액정리실적평가 는 평가기간중의 정수정리명령액에 대한 정수실적비율을 계산하되 정수정리명령액중 결손처분, 감액 및 부과취소액은 정수정리명령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③ 전항의 정수정리명령액은 당해 직원이 담당하는 지 역의 시세 채납액 전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평가및관리) (1) 시세 정수담당기관별 실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세정과장이 평가한다.

1. 수입보고서
2. 시세과장 결보

(2) 과장원의 근무실적은 다음에 의하여 기관별 소속계장이 평가하고 소속과장이 이를 확인한다.

1. 근무실적은 매월말 계단위로 이를 평가한다
2. 계장은 소속직원의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밀지 제 1 호서식외 시세과장평가카드를 작성한다.
3. 과장은 전호의 시세과장실적

평가카드를 확보하고 당해 직원의 날인을 받아 익월 10 일 이내 세정 과장을 참조로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징원이 10 명미만인 계에서는 우수자 1 명 하위자 1 명 나. 과징원 10 명이상인 계에서는 우수자 2 명, 하위자 2 명 다. 과징원 20 명을 초과할 때에는 각각 1 명을 추가한다.

제 4 조 (평가기준) ① 기관 및 과징원의 근무실적 평가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1. 수입목표에 대한 정수실적 비율 100 %를 30 점으로 한다.
2. 부과액에 대한 정수실적비율 100 %를 50 점으로 한다.
3. 과년도 채납액에 대한 정수실지비율 30 %를 10 점으로 한다.
4. 채납시세증 채납처분(채권 확보) 실적비율 50 %를 10 점으로 한다.

제 5 조 (상벌) ① 평가결과 실적의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표창장(이하 "조례"라 한다)의 칭하는 바에 따라 이를 표창한다. ② 과징원의 근무실적은 매월 제출된 시세과징평가카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3 월간 계속 우수자는 처분의 범위 안에서 상급을 수여한다.
2. 6 월간 계속 우수자 및 연간 6 월이상 우수자에 대하여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고 정장의 범위 안에서 상급을 수여한다.
3. 계속 3 월간 하위자 및 6 월간 3 회이상 하위자에 대하여는 근무불성실률 이유로 징계로 하여 소속청에서 전출조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준용) 시세과징조사공무원중 내근 사무정리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3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고 시

및 각 특별회계 제 1 회세입세출 추
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㉔ 서울특별시고시제 38 호

1973. 5. 25.

197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장

| 회 계 별 | 예 산 액 |
|-----------------|------------------|
| 총 계 | 75,072,124,000 원 |
| 일 반 회 계 | 41,430,186,000 원 |
| 두 밀 회 비 | 33,641,938,000 원 |
| 수 녁 비 | 2,174,869,000 원 |
| 보 지 구 회 정 리 비 | 5,959,621,000 원 |
| 지 하 결 건 설 사 업 비 | 12,560,272,000 원 |
| 하 수 처 리 장 비 | 504,168,000 원 |
| 전 신 자 재 생 산 비 | 408,651,000 원 |
| 규 모 도 로 비 | 348,362,000 원 |
| 시 민 퇴 관 비 | 190,677,000 원 |
| 재 해 구 호 사 업 비 | 62,298,000 원 |
| 운 수 사 업 비 | 1,309,812,000 원 |
| 수 도 사 업 비 | 10,123,208,000 원 |

| 사 경 | | | |
|--|--|--|--|
| <p>◎ 1973.5.23</p> <p>성 북 구 지방행정서기 마포구 근무를 명함.</p> <p>경기도심포군 지방농림기원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농림기원에 입함. 2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p> <p>◎ 1973.5.24.</p> <p>경기도양양군 농업기사보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농림기사보에 입함. 3호봉을 급함. 남산공원관리사무소 근무를 명함.</p> <p>삼립성립정규 이 용 과 농업기사보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농림기사보에 입함. 3호봉을 급함. 녹지과 근무를 명함.</p> <p>자동차정비장 지방기계기과 (정비과장)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3월에 처함.</p> | <p>박 경</p> <p>정 용 제</p> <p>박 승 준</p> <p>강 화 주</p> <p>심 형 주</p> | <p>동대문구 지방지적기사보 조 규 은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p> <p>영등포구 지방토목기원 심 영 두 수도사업소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6월에 처함.</p> <p>영등포구 지방토목기원 이 일 환 수도사업소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p> <p>영등포구 지방토목기원보 전 일 일 수도사업소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6월에 처함.</p> <p>영등포구 지방토목기원보 이 농 기 수도사업소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6월에 처함.</p> <p>북부유지 지방농림기원보 최 승 진 사업소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p> <p>구 회 결 과 지방토목기원 이 상 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정심 사위원회에 결성에 따라 73.2. 23 (발령제 182호) 감봉 1월을 동일자로 변경 견책에 처함.</p> | |

| | | |
|---|-------------------|---|
| <p>회 정 리 2 과</p> | <p>지방토목기원 김성정</p> | <p>박과수</p> |
| <p>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의심 사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73.2. 13 (발령제 182호) 각봉 6월을 동일자로 변경 각봉 3월에 천입.</p> | | <p>지방행정사무관 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시정개발 담당판설 제 5개발 담당에 보함. 1973.5.25</p> |
| <p>공 부 병 원 지방간호기사보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p> | <p>김 조 자</p> | <p>충 청 북 도 지방행정주사보 고 아 승</p> |
| <p>수 도 관 리 소 지방토목기사 임소제 2 과 근무를 명함.</p> | <p>김 영 규</p> |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2호봉을 급함.</p> |
| <p>청 소 제 2 과 지방기계기사 서부위생처리장 파견근무물 래체함.</p> | <p>주 재 형</p> | <p>종 로 구 근무를 명함. 충 청 남 도 지방행정서기보시보 섭 열 현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p> |
| <p>청 소 제 2 과 지방건축기사보 영선과 파견근무물 명함.</p> | <p>김 장 희</p> | <p>지방행정서기보 시보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p> |
| <p>아파트관리과 지방건축기원 영선과 파견근무물 명함.</p> | <p>이 장 규</p> | <p>© 1973.5.26. 서대문부진소 지방행정주사보 태 경 발</p> |
| <p>자 동 차 운수사업소 지방기계기원 73.7.31까지 자동차정비장 파견근무물 명함.</p> | <p>류 영 옥</p> | <p>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3.3.27 (발령 제 265) 징계처분 (전직)을</p> |
| <p>동 원 과 지방행정사무관 (동원계장) 해 리하이 그직을 면함.</p> | <p>한 광 환</p> | <p>동일자로 취소함.</p> |

| | |
|--|--|
| <p>전 실 부 행정주사보 권 우 택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2 호봉을 급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p> <p>경기도인천시 지방행정주사보 장 경 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p> | <p>6 호봉을 급함. 중구 근무를 명함.</p> <p>도 시 가 스 지방행정사기보 양 흥 준 사 업 소 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p> <p>구 회 정 리 지방행정주사보 지 원 국 제 지방공무원법제 63 조제 1 항제 1 호 의 규정에 의하여 후직을 명함.</p> |
| <p>서 울 북 별 시 장</p> | |